

#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 운영 지침

제정 2023. 02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①이 지침은 경기콘텐츠진흥원(이하 '재단'이라 한다.)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(이하 '교육지원'이라 한다.)의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과정, 학사운영,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목표)** ①교육지원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을 지원하여 영상미디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도내 크리에이터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.

②교육지원을 통한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목표로 한다.

③운영기간 내 교육장의 활용과 수강생 관리를 지원한다.

**제3조(운영방침)** ①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과정별 맞춤 교육 제공

2.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선도하는 1인 크리에이터 육성

**제4조(교육장)** ①교육지원은 재단이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교육장에서 운영한다.

## 제 2 장 수강생 선발

**제5조(수강생 선발)** ①수강생은 각 과정별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. 단, 10시간 미만 단기 과정의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선발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수강생은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 단, 일부 과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자격 및 전형

**제6조(전형방법)** ①교육지원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.

1. 지원서
2. 동의서
3. 증빙서류
4. 운영채널 정보 등

②수강생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진행하며, 제출 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전화 또는 대면면접을 진행한다. 단, 10시간 미만 단기 과정의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선발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③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지원자격 및 전형절차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.

**제7조(등록절차)** ①수강이 확정된 자는 교육지원을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선발 취소 및 수강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, 예비 합격자 또는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한다.

### 제 4 장 결석 및 학사경고

**제8조(결석)** ①수강생이 교육 당일 출석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업 시작 시간의 1시간 이후까지 출석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.

②단, 불가피한 상황(질병, 재해, 재난, 국방, 직무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7일 내에 관련 증빙을 사업 담당자에게 제

출해야 한다.

③수강생이 수업에 참여한 시간만큼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며, 총 이수 시간을 수료 기준으로 한다. 단,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전항을 준용한다.

**제9조(학사경고)** ①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으며, 교육 중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한다. 제적 시 추후 재단의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1. 학습태도 불량 등으로 타 수강생의 수강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 자
2.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(교육지원 영상 및 자료의 전 재·복제·배포·공유 등)
3. 교육장비 및 기자재 절취, 파손 또는 허가 없이 장비를 해체한 자

②학사경고 여부는 교육지원 지침을 근거로 하여 재단 담당부서 및 본부장 승인 하에 결정한다.

## 제 5 장 기자재 사용 및 저작권 권리

**제10조(기자재 사용 준칙)** ①교육실습 및 프로젝트 제작을 위해 기자재 사용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기자재 사용은 수강생 본인에 한하며, 관리자 사전 허가를 통해 배정한다.
2. 기자재 사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.
3. 기자재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기자재를 분리 및 조립할 수 없다. 교육장비 및 기자재 절취 또는 허가 없이 장비를 해체하여 장비에 손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장비를 배정받은 수강생 본인이 이를 변상한다.
4. 기자재 사용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그 일정을 조정한다.
5. 수강생 개인이나 팀의 과실로 인한 기자재 손·망실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 사용자 또는 팀이 변상하여야 한다.
6. 위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사용일정을 어길 경우 일정기간 해당자의 사용권한을 박탈하고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저작권의 귀속 등) ①교육지원 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수강생에게 귀속된다.

②단, 경기도 및 재단이 홍보, 공익 목적의 전시회 참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텐츠의 사용이 가능하다.

## 제 6 장 보 칙

제12조(학칙 개정절차) ①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담당부서 및 본부장 심의 이후 재단 기관장이 확정한다.

## 부 칙

이 학칙은 기관장의 결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